

의안번호	제 296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살천협의회 설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11월 1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9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11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채택한 「의제21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, 도민 등과 함께 민간 주도로 지구환경보전 활동을 하도록 함
- 「의제21」에서는 지역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'97년 12월 「청풍명월21」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는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 (안 제2조)
- 협의회의 구성 (안 제3조)
-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(안 제7조)
- 경비지원 대상사업 (안 제10조)
-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 (안 제11조)
- 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도민, 기업, 행정기관,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
2. 각종 오염행위 감시 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
3. 청풍명월21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 체계 구축
4.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안건의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

- 가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
- 나.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, 건설방재국장

2. 위촉직

- 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, 도의원 등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자
- 나.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

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직무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.
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부협의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, 부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
2.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
3.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의 위촉해제) 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1.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9조(사무처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, 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의 지원)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추진
3.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
4.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
5.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
6.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
7.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11조(지원방법 및 정산) ① 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조금은 반기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.

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「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독)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회의 규정)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 및 그 밖의

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

- 제24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** ① 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도는 시·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도는 도민, 사업자,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·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,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4조(기금의 사용 등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
 2.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」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
 3.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
 4. 생태계, 생물종의 보존·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
 5.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
 6.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